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1181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730 판결

##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 고 1.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호

2.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3.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8.

## 주 문

1. C 주식회사에 구미시 D 공장용지 2,720.9㎡에 관하여,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A는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B는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예비적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구미시 D 공장용지 2,7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3.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 예비적으로, 피고 A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다항, 예비적으로, 피고 B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 1) 원고는 C이 1993. 6. 5.부터 1994. 7. 25. 사이에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C이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4. 8.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4. 9. 13.부터 1994. 12. 9. 사이에 주식회사 E 등에 위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 다. 구상금 청구 등

-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8.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그 후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8가단96953호)를 제기하여 2009. 2. 13. '구상금 합계 1,338,852,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다시 C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8차전21796호)을 신청하여 2018. 12. 14. ‘구상금 합계 1,347,844,93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20. 6. 26.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7,311,341,415원이 남아 있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

1) C은 1999. 9. 10.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대금 8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의 채권자인 G은 2004. 9. 7. F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6869호)를 제기하여 2006. 1.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16.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5. 2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되어 그 등기 명의가 C 앞으로 회복되었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3. 피고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3. 15. 피고 A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3. 21. 피고 B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6761호)를 제기하여 2007. 4. 26. ‘881,42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7933호)를 제기하여 2010. 10. 15. '811,990,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같은 법원 2017차전5974호)을 신청하여 2017. 4. 19. '887,281,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판결 및 지급명령은 각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주위적 청구)

C과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것이므로, C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회복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 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예비적 청구)

채무자인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

####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발생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이므로, 위와 같은 취소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후에 위 구상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였다.

## 다. 피고 A, B의 주장

###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C을 권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C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나)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2018. 3. 15.과 2018. 3. 2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위 피고들이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C과 F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C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C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C와 F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C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C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C 명의로 회복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취소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나,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권리변동에 관하여 우리 법률제도가 부동산 등기를 물건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의 취소를 인용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자신에게 환원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피고들은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정당한 채권자의 회수활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소송비용까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승소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 제100조(승소 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비용)에서 규정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이 사건 변론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가 규정하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이성균, 판사 서청운, 판사 이규석